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4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항 : ①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추가

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③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8. 7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 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 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지</u>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 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 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 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요약정보
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 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, (생 략)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 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 략)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28. 기준</u>
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4. 4. 21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투자자유지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〈신 설〉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〈신 설〉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u>2024.08.07</u> <u>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)</u>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u>2023.06.23</u> <u>- 자투자신탁 추가(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)</u> <u>2024.08.07</u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	---



			- <u>환매일정 변경 : 2(3)영업일 기준으로 4(4)영업일에 지급 → 3(4)영업일 기준으로 3(4)영업일에 지급</u> - <u>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, 기업어음증권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	<u>2024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경과 내역 삭제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 - <u>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u> <u>책임운용역 : 신흥섭</u> <u>(2020.01.09~2020.07.21)</u>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 - <u>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u> <u><삭 제>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채권) 및 기재 명확화 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및 번호 정정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<u>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u> 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가등급 A-이상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 7)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 8) <u>(생략)</u> 9) <u>(생략)</u> 10) <u>(생략)</u>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<u>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u> 1) 채권 : 사채권(<u>취득시</u> 신용평가등급 A-이상 <u>전자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</u>)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 <u><삭 제></u> 7) <u>(현행과 같음)</u> 8) <u>(현행과 같음)</u> 9) <u>(현행과 같음)</u>

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	11) (생략) 〈신설〉	10) (현행과 같음) ▶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번호 정정	12) (생략)	11) (현행과 같음)
기재 정정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생 략)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생 략)
모투자신탁의 투자대 상자산 추가(단기채 권) 및 기재 명확화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 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가등 급 A-이상, 사모사채권,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 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<u>취득시</u> 신용 평가등급 A-이상) <u>전자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</u>)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 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
모투자신탁의 투자대 상자산 추가(기업어음 증권)	3) <u>양도성예금증서</u> 〈신설〉	3) <u>어음</u> ▶ <u>기업어음증권(신용평가등급 A2 이상, 기업이 사업에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 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</u> ▶ <u>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 음(신용평가등급 A2 이상)</u> ▶ <u>양도성 예금증서</u>
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번호 정정	7)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 8) (생략) 9) (생략) 10) (생략)	〈삭제〉 7) (현행과 같음) 8) (현행과 같음) 9) (현행과 같음)

	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	11) (생 략) 〈신 설〉	10) (현행과 같음) ▶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	번호 정정	12) (생 략)	11) (현행과 같음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기재 정정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, 트러스톤중기채 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 대출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, 트러스톤중기채 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법 제 83 조제 4 항 에 따른 단기 대출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	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	1) 투자전략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☐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 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/트러스톤중장기증 권모투자신탁[채권] 〈신 설〉	1) 투자전략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☐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 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/트러스톤중장기증 권모투자신탁[채권] (3) 크레딧 전략
	번호 정정	(3) (생 략)	(4) (현행과 같음)
	기재 구체화	2) 위험관리 전략 ☐ 채권 위험관리 전략 〈신 설〉	2) 위험관리 전략 ☐ 채권 위험관리 전략 세부 위험관리 전략 기재 구 체화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 지 않습니다. (생 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 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 지 않습니다. (생 략)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 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 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

		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</u> <u>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	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</u> <u>사가 보호를 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 습니다. (생략)
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 항 반영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 청 가능시간 (신설)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 청 가능시간 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</u> <u>수로 부과 여부〉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28. 기준</u>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4. 4. 21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4. 4. 21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4. 4. 21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	- (신설)	<u>2024. 6. 30. 기준</u> <u>2022.11 종합자산운용사 전</u> <u>환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3. 집합투자재산 관 리회사에 관한 사항 (신탁업자)	신탁업자 정보 업데이 트	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특별</u> <u>시 중구 을지로 55 (02-</u> <u>2002-1111)</u> 연혁 : (신설)	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특별시</u> <u>중구 을지로 35(을지로 1 가)</u> <u>(1599-1111)</u> 연혁 : <u>1971 년 6 월 설립,</u>

			2015년 9월 외환은행 합병
--	--	--	------------------

